

## 【 2024년 민간기업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청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는 기업의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하반기 내 배포 예정) 2024년 윤리경영 CP 가이드라인 시범 적용 및 운영을 위해 교육, 컨설팅, 현황 진단 등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하단의 ‘윤리경영 CP 운영 지원 신청 양식’을 작성하신 후 담당자 [이메일\(jjunga86@korea.kr\)](mailto:jjunga86@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기업은 유선 통보 예정(8월 중)이며,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자(☎044-200-7164, 손정아 사무관)에게 유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기업 등이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을 위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기업을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제도 구축, 부패위험 관리 등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 및 활동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가이드라인 : 국제 주요 가이드라인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5개의 CP 진단영역(체계, 운영, 소통, 모니터링 및 개선, 공개 및 기록보관)을 도출하여 지표 별 CP 운영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55개의 체크리스트 제공

###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개요 >

1. 지원 기간 : 2024년 8월 ~ 2024년 12월
2. 지원 내용
  - 1) CP 운영 지원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안내
    -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법규범 동향, 사례 등 교육
    - 부패 리스크 식별·경감조치 및 관리방안 등 CP 세부 운영방안 제시
  - 2) 지표 적용
    - CP 운영 결과에 대한 지표별 진단 실시
    - 맞춤형 개선·보완방안 등이 포함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제공

### < 민간기업 윤리경영 CP 운영 지원 신청 양식 >

기업명	규모 <sup>①</sup>	업종 <sup>②</sup>	담당자/부서명	연락처 <sup>③</sup>
(주)000	중견기업	제조업	홍길동/감사실	사무실/휴대전화

①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중 택 1, ②국세청 ‘업종분류코드’에 따름, ③사무실 및 휴대전화 번호 병기

# 참고

# 기업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크리스트

진단영역	진단 요소	진단 지표	세부 체크리스트	
I.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체계 구축	리더십	고위경영진 실천의지	1. 고위경영진이 CP 실천의지에 대한 지지와 약속을 공표하는가?	
			2. 고위경영진은 규범준수와 함께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만들고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고위경영진 역할과 책임	3. 고위경영진은 CP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가?	
			4. 고위경영진은 CP 준수를 위한 여건 등을 확립하였는가?	
	조직	책임자 및 전담조직	5.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전문성과 자격이 있는 자로 CP 책임자를 임명하는가?	
			6. CP 책임자에게 운영 등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7. CP 책임자에게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가?	
			8. CP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이 지원되는가?	
	규정	운영 지침	9.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규범을 포함하여 명확하고 접근가능한 부패방지 관련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CP 지침은 회사가 운영하는 모든 관할권에서 동등하게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는가?	
II.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운영	부패위험 식별·평가 및 대응	식별	11. 주요 부패위험을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국가, 사업, 거래,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에서 활용하는가?	
			12. 부패위험 식별 과정에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는가?	
			13. 식별과정에서 합리적 방법론을 활용하고 제3자의 검증을 받았는가?	
		평가	14. 식별된 부패위험을 기준으로 기업의 리스크 취약성을 평가하였는가?	
			15. 식별된 부패위험에 대하여 분류, 등록 및 위험수준별 경감조치 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였는가?	
		위험신호 대응 및 관리	16. 회사는 위험신호(Red Flags)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17. 회사는 위험신호 포착 시 대응절차 및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는가?			
	특별위험영역 관리	18. 회사는 부패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특별위험 영역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19. 회사의 운영지침, 규정, 체계 등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가?		
	공급망 관리	정의	20. 회사는 부패방지 글로벌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특별위험 영역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정책 및 준수	21. 회사는 반부패 운영지침상 공급망에 대한 정의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
				22. 회사는 공급망과 관련한 부패방지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23. 회사는 공급망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준수하도록 권고 및 이행토록 노력하고 있는가?		
		실사 및 모니터링	24. 회사는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 체결 시 부패방지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패 행위 발생 시 계약 해지, 원상회복, 피해구제 등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25. 회사는 공급망을 대상으로 이슈 발생 시 실사 등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고충처리 체계	고충처리 체계	26. 회사는 공급망의 반부패 정책과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27. 회사는 공급망을 대상으로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진단영역	진단 요소	진단 지표	세부 체크리스트
	신고	신고체계	28. 내외부 임명의 신고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가?
			29. 회사는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할 당국에 해당 범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 시 충분히 협조하는가?
		처리 및 결과 공개	30. CP 전담조직 등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 결과 보고 및 이후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31. 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지침 등에 따라 종사자들이나 제3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되는가?
		보호 및 보상	32. 신고 처리과정에서 불법행위의 패턴 등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33. 회사는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등 보호 조치를 취하는가?
34. 회사는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의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 규정을 마련·시행하고 있는가?			
III. CP 소통	교육	일반형 교육	35. 회사는 웹사이트, 이메일, 뉴스레터, 회사 잡지, 연례보고서,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36. 회사는 교육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교육내용·방법 등을 보완하였는가?
		맞춤형 교육	37. 이해관계자 및 공급망을 대상으로 CP 방침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권장 또는 실시하고 있는가?
			38. 회사는 고위험 부서/사업/직급/비즈니스 파트너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소통	소통	39. 회사의 반부패 경영 제도(운영지침, 행동규범 등)에 대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하고 있는가?
			40. 회사는 임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인식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가?
IV. 모니터링 및 개선	모니터링	체계 및 정책	41. 회사는 반부패 정책, 체계,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가?
		CP 제도	42. CP 효과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P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가?
			43. 회사는 독립부서/ 외부조직 등 제3자를 통해 CP 제도를 점검하고 결과를 개선사항에 반영하는가?
	조치 및 개선	인센티브	44. 회사는 CP 운영과 관련하여 승진 등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는가?
			45. 모든 임직원에게 인센티브/제재 평가 기준을 명확히 공개·적용하고 있는가?
		제재조치	46. 부패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히 조사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는가?
			47.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준수되고 징계 등의 제재가 위반행위와 비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	48. 회사는 재발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정기적인 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49. 부패행위가 감지된 이후 회사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하였는가?
		구제조치	50.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V. 공개 및 기록보관	공개	공개기준	51. 회사는 반부패 관련 국제적 규범, 글로벌 공시 기준 등에 부합한 공개 기준을 정립하였는가?
		공개내용	52. 회사는 위반사항 등을 포함한 반부패 활동 내역을 공시 요건에 맞게 공개하는가?
			53. 회사는 전반적인 리스크 평가 결과 및 부패 위험에 취약한 프로세스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기록 관리	체계	54. 회사는 기록물 보존 및 관리 기준 마련 등 관련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55. 회사는 내부조사 결과, 임직원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록 및 관리하고 있는가?